

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66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4월 22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
황 의 형

1. 제안이유

-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직장금고를 타에 우선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과 직장금고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규정인바, 주민 누구나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제한조건 없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규정을 삭제하고
- 판매수익금 관리는 그 판매인 스스로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판매인 지정시 직장금고를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
(안제8조 제3항)
- 판매수입금 관리조항 삭제 (안제22조)

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③ 판매인을 직장금고로 지정하였을 경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.

안제22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판매인지정) ①~② 생략 ③ <u>직장세마을금고,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(이하 “직장금고”라 한다.)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④ <u>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들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경우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.</u>	제8조(판매인지정) ①~② (원안과 같음) ③ (원안과 같음) ④ (원안과 같음)	제8조(판매인지정)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<u>판매인을 직장금고로 지정하였을 경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들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.</u> ④ < 삭 제 >
제9조(판매인의 결격요인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. 1. <u>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 2. <u>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u> 3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</u> 4. <u>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</u>	< 삭 제 >	< 개정안과 같음 >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(생략) ② <u>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,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,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③~④ (생략)	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< 삭 제 > ②~③(현행 ③~④항과 같음) < 삭 제 >	< 개정안과 같음 > < 개정안과 같음 >
제15조(판매인의 승계) 판매의 사고,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유 발생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	< 삭 제 >	< 개정안과 같음 >
제22조(판매수익금의 관리) ① (생략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상호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(판매수익금의 관리) ① (위안과 같음) < 삭 제 >	< 삭 제 >

